# 2019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1. 채용개요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직급

| 분 야 | | | 인원 | 채용직급 | 비 고 |
|---|---|---|---|---|---|
| 채용형 인턴[1] | 공개경쟁 | · 일 반 | 51 | 청년인턴 | · **승강기 검사 및 인증 분야**<br>· **정규직 전환** 결정 시 전환일로부터 **1개월 간 시간선택제 근무**(일 6시간) |
| | 제한경쟁 | · 지역인재(경남) | 28 | | |
| | | · 장애인 | 15 | | |
| | | · 국가유공자 | 16 | | |
| **합 계** | | | **110** | | |

1) 채용분야별 채용 특례 : 특정 채용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다른 채용분야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일반-지역인재(경남)-장애인-국가유공자 순)
(예시) 국가유공자 분야 최종 10명 합격(6명 부족), 일반분야 57명 합격(6명 추가)

* 인턴 종료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자격취득 여부, 교육성적,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턴 수료인원의 70% 이상을 정규직(7급) 전환**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지역인재(경남)·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일반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 채용분야 | 근로시간 | 근무기간 | 보수(月) |
|---|---|---|---|
| 채용형 인턴 | 주 40시간<br>(주 5일, 8시간/일) | '19. 10월 ~<br>근무일로부터 3개월[1] | 월급 175만원[2] |

1) 근무시작일은 별도 안내,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정규직 미전환 시 당연면직 처리됨

2) 세전 월 총액(4대보험·중식비 포함)

## 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3. 응시자격,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공통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2019. 10월 중)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1]
- ① **'승강기 기사'** 및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또는
  ② **2019년 4회 '승강기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필기전형 응시한 자**[2] 또는
  ③ '승강기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 **필기전형 합격자로서 2019년 4회 '승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전형 응시 예정자**

1)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2) Q-Net(www.q-net.or.kr) '승강기 기사 및 승강기산업기사' 시험일정 참고(원서접수_8.16(금)~8.22(목))

**< 개별 응시자격,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세부내역 >**

| 채용분야 | 개별 응시자격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
| **일 반** |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 승강기 검사기법 연수<br>• 승강기 관련 업무 보조 | 전국[3] 지역사무소 |
| **지역인재(경남)** | •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경남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br>* 부산, 울산, 대구, 경북지역 소재 학교는 비대상 | |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장애인**<br>* **승강기 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법 상 **취업지원대상자** | | |

3) 입사지원서 작성 시 근무희망지역(1·2지망) 명시

- 근무희망지역은 배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공단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희망근무지와 관계없이 배치될 수 있음

## 4. 가산점

| 구분 | 우대대상 | 대상전형 | | 가산점 (만점 기준) | 부 여 기 준 |
|---|---|---|---|---|---|
| | | 필기 | 면접 | | |
| 법정 | 장애인 | ○ | ○ |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 | 국가유공자 | ○ | ○ | 5% 또는 10% | 관련법령[1]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
| 한국사 자격증 | 전 분야 | ○ | ○ | 3%, 2%, 1%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자<br>·1급 3%, 2급 2%, 3급 1% |

1) 관련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10%까지 적용

## 5. 전형절차

| 전형단계 | 주요내용 | 일 정 |
|---|---|---|
| 공고 및 접수 | • 공고 : 홈페이지, 알리오 등 | '19.8.12.(예정) |
| | • 접수 : 온라인 접수 | '19.8.22. ~ 8.26.(예정) |
| 서류전형 | • 합격자 심의 | '19.8.28.(예정)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8.30.(예정) |
| | • 이의신청 및 접수 | '19.8.30.~9.2.(예정) |
| 필기전형 | • 필기시험 | '19.9.7.(예정) |
|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9.9.10.(예정) |
| | • 이의신청 및 접수 | '19.9.10.~9.11.(예정) |
| 면접전형 | • 경험면접 | '19.9.17.~9.20.(예정) |
| 최종합격자 확정 및 발표 |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19.9.27.(예정) |
| 임 용 | • 임용일 | '19.10월 중(예정)<br>※ 채용 결격사유 검증 후 최종합격자에게 임용일 개별통지 예정 |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함

# 6. 전형별 심사기준

## 가. 서류전형

○ **(합격요건)** 공통 및 해당 분야 개별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

## 나. 필기전형

○ (시험구성)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세 부 사 항 |
|---|---|---|
| [1교시]<br>NCS직업기초능력평가<br>+ 직무수행능력평가 | 100분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br>-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br>• **직무수행능력평가 (50%)**<br>- 승강기 검사기술 과목(30%)<br>: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br>-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70%)<br>: 일반기계공학, 전기제어공학, 일반기계·전기제어통합 중 **택일** |
| [2교시]<br>인성검사 | 30분 | - |

○ **(합격자 결정)**

- 기준에 미달하는 자* 제외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
    직무수행능력평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
    인성검사 ① **신뢰도 부적합** 제외,
    ② 등급 **'보통' 미만** 제외(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한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2배수**로 운용

- 동점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다. 면접전형

○ (평가요소 및 유형)

| 평 가 요 소 | | 면접유형 |
|---|---|---|
| ① 직업관(직업윤리) |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경험면접** |
| ③ 발전가능성 | ④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
|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필기 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면접전형 평점이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예의·품행 성실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대행업체시스템으로 일괄 접수

○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서류 제출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응시원서 접수<br>(인터넷 접수)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
| 서류전형 합격자<br>(인터넷 접수) | • 응시자격 검증용 서류(별도 안내) | |
| 최종 합격자<br>(우편 제출) | 공 통 | 해 당 자 |
| | ① 입사서류 각 1부(별도안내)<br>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 ① 자격증 사본 1부<br>②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1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재경영실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 8. 유의사항

○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제출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작성(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등)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원서 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 시 자격증, 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입력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각종 자격 해당여부 등이 응시원서의 입력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되니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에 제시된 대로 접수합니다. **만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 내[1]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이때,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최종 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통한 부정합격이 적발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공단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 공지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 통지 됩니다.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채용 담당자(☎055-751-0988, **문의시간 평일 14시~17시**)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우대사항(상세)
2. NCS 직무 설명자료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1) 반환 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붙임 1]**

# 우대사항 (법정 가산)

**<1> 국가보훈 대상자**(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우대 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시고 추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허위로 판명될 경우 득점 순위와 관계없이 합격 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장해등급 11급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상이등급 6급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붙임 2] NCS 직무 설명자료**

# 승강기 법정검사_직무기술서

| NCS 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15. 기계 | 05. 기계장치설치 | 01. 기계장비설치·정비 | 승강기 법정검사 (공단 자체개발) |
| 채용분야 | 채용형 인턴 – 기술분야 | | | |
| 공단 주요사업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 | |
| 핵심책무 (능력단위) | ○ 승강기 법정검사(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 실시 | | | |
| 직무수행내용 |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 검사 준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 | | |
| 필요지식 |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의 이해, 검사유형(설치, 정기, 수시, 정밀안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승강기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기계) 해석, 승강기 조작 매뉴얼, 승강기 이용자 준수 사항, 검사 측정장비 종류 및 사용 메뉴얼 등 | | | |
| 필요기술 | ○ (승강기 법정검사)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 능력,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 능력, 검사정보시스템(전산) 사용 능력, 기계실·승강로·승강장·피트 등 구조파악 및 검사능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기계) 해석 능력, 검사 측정 장비 사용 능력,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 | | |
| 직무수행태도 |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검사기준 및 매뉴얼을 준수하는 태도, 공정한 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 주의 | | | |
| 필요자격 | ○ 승강기 기사 | | | |
| 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 | | |
| 참고사이트 |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 | | |

**[붙임 3]**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br>(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